《2022. 9월 2차》



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.

## 수원을 사람에 시민을 빛나게



##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 : 경조사비 경영



## 7 과 려 거

- O「청탁금지법」제2조(정의)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- 3. "금품등"이란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나. 음식물·주류·골프 등의 접대·향응 또는 교통·숙박 등의 편의 제공
- O「청탁금지법」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
-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·후원·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-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제17조제1항 별표(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범위)
  - · 음식물 : 3만원 / 선물 : 5만원 / 경조사비 : 5만원

## 과 려 판 례

- O 건설회사 대표A는 OO시 공사 계약실적이 있는 직무관련자로 OO시 B과장의 장남결혼식에 축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
- □□시 C과장은 장남결혼식에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 600만원의 축의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1,200만원 부과
- O D대학의 E교수가 장녀결혼식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졸업생, 강사 등 6명에게 각 20만 원의 법정한도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이며, 나아가 E교수는 청첩장 배 포를 넘어 본인의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결혼식을 공지하는 글을 기재하고 일부 지인들 에게 모바일 청접장뿐 아니라 자신의 계좌번호도 전달하여 넓은 범위의 지인과 직무관련자 들에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점 등을 통해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60만원의 과태료 부과

부조리 신 고

- 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<u>ઁ ૹૣૣ૾ૹૣૣૢ</u> 클릭, 케이휘슬 연결)
- ★ 감사관 핫라인(☎031-221-3650), 부패·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